

- ## I 공급대상

- (단위 : m²,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084.9906A	84A	84.9906	32.7277	117.7183	67.2137	184.9320	212
084.9957B	84B	84.9957	32.3217	117.3174	67.2177	184.5351	109
084.9963C	84C	84.9963	32.2029	117.1992	67.2182	184.4174	109
102.9972	102	102.9972	37.7616	140.7588	81.4539	222.2127	144
115.9907	115	115.9907	42.9645	158.9552	91.7297	250.6849	56
148.9918	148	148.9918	51.5672	200.5590	117.8283	318.3873	35
155.9570A	155A	155.9570	58.7240	214.6810	123.3366	338.0176	2
155.9511B	155B	155.9511	58.2340	214.1851	123.3319	337.5170	2
155.9511C	155C	155.9511	57.3810	213.3321	123.3319	336.6640	2
합계							671

구분		84A	84B	84C	합계
국가유공자		4(20)	2(10)	2(10)	8(40)
장기복무 제대군인		3(15)	1(5)	1(5)	5(2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15)	2(10)	2(10)	7(35)
중소기업 근로자		3(15)	2(10)	2(10)	7(35)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4(20)	1(5)	1(5)	6(30)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3(15)	1(5)	1(5)	5(25)
	인천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1(5)	1(5)	1(5)	3(15)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주택형을 필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 자녀 등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호수 결정은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Ⅲ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일정

구분	일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4.07.12.(금)(예정)	• 롯데캐슬 홈페이지 (www.lottecastle.co.kr)
건본주택 개관	2024.07.19.(금)(예정)	• 당사 건본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28번지
특별공급 신청	2024.07.22.(월)(예정)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발표	2024.07.30.(화)(예정)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당첨자 서류제출	2024.08.02.(금) ~ 08.07.(수)(예정)	• 당사 건본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28번지
계약체결	2024.08.12.(월) ~ 08.14.(수)(예정)	• 당사 건본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28번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건본주택 별도 문의)
 ※ 청약 신청일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4.07.12.(금)(예정)]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 견본주택 및 롯데캐슬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해 거주요건,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중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백시티 투시도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백시티 현장 및 건본주택 약도
(건본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28번지)



※ 현장 위치도



문의전화 : 1551-0555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벙시티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배정내역(추천양식) - 양식

주택형	NO	유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84A	확정	장애인	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
84A	예비	장애인	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

-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 예비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예비추천인 명단 배정 시)
- ※ 2024년 7월 17일(수) 오후 5시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리며, 기간 내 미 통보 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을 한국부동산원에 등록(미등록 시 청약불가)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회신 요청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